

출입국관리법

[시행 2009. 6.20] [법률 제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9 장 보칙

제 77 조 (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<개정 2001.12.29>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(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 조 내지 제 10 조의 4 에서 규정한 장비, 장구, 분사기, 무기를 말하며, 이하 "무기등"이라 한다)을 지닐 수 있다. <개정 2001.12.29>
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 조 내지 제 10 조의 4 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29>

제 78 조 (관계기관의 협조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,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2.10>
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5.3.24>
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5.3.24>

제 79 조 (허가신청등의 의무자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17 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12.12, 2001.12.29>

1.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자
- 1 의 2.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
2.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
3.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
4.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
5.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
6.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

제 80 조 (사실조사)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 19 조·제 31 조·제 35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1999.2.5, 2001.12.29>

②법무부장관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, 제 7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 또는 제 76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난민 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1993.12.10, 2001.12.29>

③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·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2.10, 1999.2.5>

제 81 조 (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)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,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,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

다. <개정 1997.12.13>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81 조의 2 (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) 법무부장관은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이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 또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·연락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82 조 (증표의 휴대 및 제시)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1.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
2.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
3. 제 80 조 및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
4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직무수행

제 83 조 (출입국사범의 신고)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.

제 84 조 (통보의무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5>

②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·보호감호소·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,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,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「소년법」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4>

제 85 조 (형사절차와의 관계) 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. <개정 2002.12.5>

②제 1 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. 다만, 그 외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.

제 86 조 (신병의 인도)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.

②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·보호감호소·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 8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·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4>

제 87 조 (출입국관리 수수료)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, 협정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

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1.12.29>

제 88 조 (사실증명의 발급)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시·군·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1.12.29]

제 88 조의 2 (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)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·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.

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.

[본조신설 2002.12.5]

제 89 조 (각종 허가등의 취소·변경)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,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, 제 1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,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,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 20 조·제 21 조·제 23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12>

1.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
2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
3.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
4.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
5.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

②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 79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제 2 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·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 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90 조 (신원보증) ①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, 사증발급인정서발급, 입국허가, 조건부입국허가, 각종 체류허가,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(이하 "피보증외국인"이라 한다)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12>

②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(이하 "신원보증인"이라 한다)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,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12>

③신원보증인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12>

④신원보증인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 인당 300 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12>

⑤신원보증인의 자격·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6.12.12>

제 90 조의 2 (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) ①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

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(이하 "불법고용주"라 한다)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불법고용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1996.12.12]

제91조 (문서등의 송부) ①문서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, 가족, 신원보증인, 소속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.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문서등을 보관하고, 그 사유를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제92조 (권한의 위임)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시장(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)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24>

제93조 (남·북한왕래등의 절차) ①군사분계선이남지역(이하 "남한"이라 한다)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.

②외국인의 남·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1.12.29>

③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